공직복무 관련 비위행위 특정감사에 대한 조치결과

연번	처분건명	지적사항(요약)	조치결과 및 개선방안 (향후 계획 포함)
1	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·향응 수수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 훼손 [■■■■, 정OO]	○ 정OO는 신기술 인증심사를 담당하면서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총 1,400만원의 금품(8회) 및 211만원 상당의 향응(11회) 수수('13.5.~'17.4.) ○ 신기술인증 평가위원 명단 관련업체 유출('13.5.~'17.4.), 성매매(3회), 근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이탈 등 상습적 복무 위반	○ 관련자(1인) 신분상 조치 완료 - 원 급 연구원 : 정OO(파면)
2	신기술 인증 평가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[김●●, 이▲▲]	○ 신기술인증 평가위원(김●●, 이▲▲)으로 활동하면서 인증 평가중이거나 인증을 앞둔 업체 관계자들에게 정민모를 소개해주며 골프접대 알선 또는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 처신	○ 관련자 2인 신기술인증·기술검증 심의위원 후보단 3년간('17. 7.13. ~ '20. 7.12.) 제외